

2009 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

의안번호	제 590 호
의결 년 월 일	2010.4.21.

제의년월일 : 2010. 4. 20.

제 의 자 : 부천시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83조, 「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함.

2. 내 용

- 2009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대상자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대표위원	부천시의회	의 원	변채옥 (邊彩玉)	○부천시의회 의원 ○기획재정위원회 위원
위 원	삼덕회계법인	회계사	김봉권 (金鳳權)	○미국 공인회계사 ○삼덕회계법인 근무
"	나득수세무회계 사무소	세무사	나득수 (羅得洙)	○영화회계법인 근무 ○서정대학 겸임 교수
"	솔로몬세무회계 사무소	세무사	전진관 (全璿官)	○부천시 세무사회 회장 ○부천세무서 국제심사위원
"	시장 추천		임성운 (林成云)	○전 공무원(경리팀장, 문화체육과장)

3. 참고사항

관 련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제134조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이하생략)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□ 부천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은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.
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

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, (이하생략)

제6조 (대표위원)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, 지방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. (이하생략)